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정 책 기 획 과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의 미래 발전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실행력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해오며 개방형 융·복합 연구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다)「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9조

2) 필요성 :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내외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구미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력 있는 핵심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혁신 선도형 거점도시로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사무 전반

1) 연구과제 발굴 및 관련 전문가 그룹(산·학·연) 구성

2) 연구주제별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등 연구활동

3) 구미시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자문, 과제 공유 및 의견 수렴

4) 공개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시정 활용 방안 모색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 없음

마. 위탁기간 : 2027. 3. ~ 2027.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고
120	18	90	12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 9. 29.)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3. 부서의견

○ 공항경제권 지역맞춤형 전략사업 발굴과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2026년도 성과평가 및 자체감사 결과 : 적정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제12조, 제32조

3)「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

다. 비용추계서

라.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마.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구미 미래도시포럼 성과평가

1.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6. 9. 17. ~ 9. 23. [5일간]

○ 대　　상 :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 수탁기관 : 경북연구원

○ 대상기간 : 2026. 3. 18. ~ 9. 23. (2026년 사업시행일 ~ 평가일)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인력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등

○ 평 가 자 : 2명(신공항전략팀장, 신공항전략팀 주무관)

○ 평가방법 : 서면 및 실지평가

○ 평가항목 : 총 7개 항목(공통분야 4, 개별분야 3)

- 공통분야(40) : 사업계획, 인력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 개별분야(60) : 과제선정, 연구위원, 소통환류

2. 평가결과 및 총평

○ 평가결과 : 91.5점(탁월)

부문	공통분야(40)				개별분야(60)		
평가 항목	1.사업계획 (10)	2.인력관리 (10)	3.예산관리 (10)	4.성과관리 (10)	5.과제선정 (20)	6.연구위원 (20)	7.소통환류 (20)
점수	9.5	9.5	10	9	17.5	18	18

○ 총　　평 :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였으며, 미래도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연구위원을 활용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음. 또한 포럼 운영과정에서 연구진과 관련 부서간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부서 협의와 성과 환류가 필요함

2026년도 공공위탁사무 자체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6. 9. 17. ~ 9. 23. [5일간]

○ 대　　상 :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 수탁기관 : 경북연구원

○ 대상기간 : 2026. 3. 18. ~ 9. 23. (2026년 사업시행일 ~ 감사일)

○ 감사내용 : 위·수탁 협약서 준수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점검 등

○ 감 사 반 : 총괄 1명(미래도시전략과장),
점검반 2명(신공항전략팀장, 신공항전략팀 주무관)

○ 감사방법 : 서면 및 실지감사

2. 감사결과 : 위탁사무 관리·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 지적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생략

제12조(공공위탁의 감사)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공공위탁 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 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로 정산 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관련사업 추진)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위탁 추진 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 ~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소요 예산을 준용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 직접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 간접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소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5. 부대의견 :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자 : 정책기획과 정책개발팀 김량아(☎ 480-651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출 내역
계	120,000	
인건비	18,000	○ 연구보조원 인건비 **18,000천원** - 2,000,000원 × 9개월 × 1명 = 18,000천원
직접비	90,000	○ 회의비 **81,800천원** - 연구지원비(원고료, 자문수당 등) · 연구과제 12개 × 5,500,000원 = 66,000천원 - 회의 참석자 여비 · 12명 × 4회 × 100,000원 = 4,800천원 - 회의 운영비(다과비, 현수막, 좌장 수당 등) · 4회 × 500,000원 = 2,000천원 - 공개포럼(장소임대, 식대·다과, 운영비 등) · 1식 × 9,000,000원 = 9,000천원
		○ 국내여비 **2,400천원** - 12개 연구과제 × 2회 × 100,000원 = 2,400천원
		○ 유인물비 **5,300천원** - 회의자료(출력) 100,000원 × 3회 = 300천원 - 최종보고서(인쇄) 50부 × 100,000원 = 5,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인쇄비, 재료비 등 **500천원**
간접비	12,000	○ 기관 공통경비 **12,000천원**

소 관 부 서		정책기획과
입	과 장	박 영 표
안	팀 장	손 우 현
자	담 당 자	김 량 아 (480-6514)